

삼양사 녹색구매 정책



녹색구매 정책

1. 목적

삼양사는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하여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구매 초기 단계에서부터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는 친환경 녹색구매를 추진한다.

같은 용도의 다른 제품 또는 서비스에 비하여 자원의 절약에 기여하고 환경오염을 줄일 수 있는 환경마크 인증제품, 재활용 인증제품, 에너지 절약마크 인증제품, 폐기물 저감물품, 기타 환경성이 인증되는 친환경 물품을 우선하여 구매해야 한다.

이러한 친환경 물품구매의 지속적인 추진을 통하여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서의 사회적 책임 실천에 노력한다.

2. 개요

(1) 녹색구매 개념

환경 오염을 최소화하는 친환경 구매로 환경적 건전성을 함께 고려하는 구매 행위

(2) 녹색구매 정의

녹색 제품이란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 중립·녹색 성장 기본법]제66조제4항에 따른 제품

- 1) 환경표지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지원법]제17조제1항에 따라 같은 용도의 다른 품에 비하여 제품의 환경성을 개선하여 환경표지 인증 은 제품 및 동 기준에 적합한 제품
- 2) 저탄소 제품: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제18제1항에 따른 환경성적표지의 인증을 받은 제품 중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따라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제2조제5호에 따른 온실가스의 배출량을 줄인 제품
- 3) 우수재활용 제품: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제33조 및 [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에 따라 산업통상 자원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에 따라 인증을 받은 제품 또는 동 인증기준에 적합한 제품
- 4) 환경부 장관이 관계 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고시하는 대상품목별 판단기준에 적합한 상품

구분	환경표지제품	저탄소제품	우수재활용(GR)제품
표시			
운영목적	전과정적으로 환경성이 우수한 제품 (KS 품질 이상 만족)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 온실가스 배출량을 줄인 제품	폐자원을 재활용하여 제조한 제품 가운데 품질이 우수한 제품
인증기관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환경부/환경산업기술원	국가기술표준원/자원순환 산업인증원

(3) 녹색 제품 기준

1) 환경표지제품 인증기준

- ① 환경기준은 제조, 유통, 사용, 폐기 등 제품 전과정에서 환경성(유해물질 저감, 인체 안전, 절전, 절수, 재활용, 저소음 등)고려
- ② 품질 기준은 해당 제품별 한국산업규격^㉔ 등을 만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2) 저탄소 제품 인증기준

- ① 제품의 전과정(원료 채취, 수송, 제조, 사용, 폐기 등)에서 배출되는 온실가스 감축량을 고려
- ② 환경성적표지 인증을 받은 제품 중[저탄소 제품 기준]고시의 '최대허용 탄소배출량' 이하 이거나 '최소탄소감축률' 이상인 제품
 - ※ 최대허용 탄소배출량: 환경성적표지인증 제품의 동종제품 평균 탄소배출량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값
 - ※ 최소탄소감축률: 정부의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업종별 감축목표'에 기초한 3.3%

3) 우수재활용 제품(GR) 인증기준

- ① 현장심사기준은 제품 전과정의 종합적 품질관리시스템 뿐만 아니라 국내 폐자원 재활용률 및 재활용 기술 등 제품의 우수성 검토
- ② 제품표준은 재활용 원료별·제품별 품질인증기준에 따라 품질 및 성능, 환경성 등을 검토

3. 부칙

- (1) 본 녹색구매 정책은 2023. 05.09 부로 제정하여 시행합니다.

[별첨. 문건 요약]

구분	내 용
최초 제정일자	2023. 05
최근 개정일자	2023. 05
담당조직	삼양홀딩스 통합구매실 원부원료팀
승인자	삼양사 이사회 산하 ESG위원회
제.개정내용	녹색구매 정책 수립
담당자 연락처	E-mail: seungkwon.chung@samyang.com 전화: 02-740-7832